

<p>중전규정을 적용한다.</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7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더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8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參 照)</p> <p>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關한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關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단서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를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로,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p> <p>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參 照)</p> <p>서울특별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8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5항중 “증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p> <p>제22조를 삭제한다.</p> <p>제27조제2항중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p> <p>제8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49조제1항중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을 “납세의무자는 경주종료일”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마사회에”를 “납세의무자에게”로 한다.</p> <p>제50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경마”를 각각 “경주”로 하며,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액</p> <p>3.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경주투표 적중수</p>

<p>4.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p> <p>제51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p> <p>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p> <p>제52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竝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9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竝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竝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關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竝형자동차(이하 “竝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p>	<p>적으로 한다.</p> <p>제2조(불균일과세) 竝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배 기 량</th> <th colspan="2">씨 씨 당 세 액</th> </tr> <tr> <th>영 업 용</th> <th>비 영 업 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11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140원</td> </tr> <tr> <td>3,000씨씨 이하</td> <td>12원</td> <td>165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15원</td> <td>200원</td> </tr> </tbody> </table> <p>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p> <p>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십시오.</p> <p>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p> <p>따라서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140원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200원																